

# 2023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외부평가 설명회

2023. 03.02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실무위원 조민희

# 외부 평가자(의사) 법적근거

(시행규칙 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기준 등>

- ① 공단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관한 관리 능력
  2. 건강진단·분석 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등 건강진단 업무 수행능력
  3. 건강진단을 받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만족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외부평가 항목

분야	평가 항목		배점	문항수	분야	평가 항목		배점	문항수
A 운 영 체 계	총 계		400	38	B 업 무 성 과	총 계		600	29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 계	80	7		B.1	건강진단결 과 및 판정 신뢰도	310	13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150	8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120(+10)	7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170	19		B.3	신규 발굴율	50	1
	A.4	정부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80~ +10)	3		B.4	고객 만족도	60 (-20)	4
	A.5	종합화	(+5~ +10)	1		B.5	그 밖의 제반사항	60 (+10)	3
					B.6	직업병 감시체계	(+50)	1	

# 평가반 구성

## ○ 기존 특수건강진단기관

: 3명[내부 2명, 외부(의학분야) 1명]으로 구성

- 공단 내부직원 : 평가센터 직원 16명(2인 1조 6~8개반 운영)
- 외부 전문가 : 35명 예정(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추천받아 인력풀 구성·운영

# 평가 실시

## ○ 일정 : 3월~9월말

- 기관별 사전 희망일 파악 후 평가일정 수립

## ○ 내용

- 수립된 일정에 따라 기관별 방문평가 실시
- 공단 평가팀과 외부평가자는 개별 방문 가능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평가결과 통보

- 일정 : 10월 중

내 용 : 평가점수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 ○ 이의신청 접수

- 일정 : 10월 중

- 이의신청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서 접수

## ○ 이의 신청내용 검토 및 재평가

- 대 상 : 이의신청 기관 전수

- 검토방법 :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재평가(방문평가)여부 결  
정 후 이의신청 접수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관 통보

등 급	기 준
S등급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A등급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B등급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C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D등급 (디딤돌 불가)	<p>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p> <p>○ 평가운영위원회는 대상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p>

# 평가 결과 현황(2013-2021년)

구 분	특수건강진단기관					야·특기관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19년	2021년
총 계	145(100)	162(100)	206(100)	212(100)	216(100)	51(100)	54(100)
S등급	1(0.7)	25(15.4)	43(20.9)	21(9.9)	29(13.4)	3(5.9)	-
A등급	45(31)	79(48.8)	84(40.8)	90(42.5)	83(38.4)	14(27.4)	19(35.2)
B등급	55(37.9)	38(23.5)	53(25.7)	80(37.7)	78(36.2)	15(29.4)	14(25.9)
C등급	99(30.4)	20(12.4)	26(12.6)	21(9.9)	24(11.1)	19(37.3)	13(24.1)
D등급	-	-	-	-	2(0.9)	-	8(14.8)

# 2019년 대비 2021년 평가결과

구 분	총 점수			A. 운영체계			B. 업무성과			공단위원			외부위원		
	'19년	'21년	증감	'19년	'21년	증감	'19년	'21년	증감	'19년	'21년	증감	'19년	'21년	증감
총 합계	789.4	792.6	3.3	306.8	311.1	9.4	482.6	475.1	-6.5	502.5	502.9	-0.3	284.1	289.7	5.6
대학병원/ 대학부속	831.4	848.0	16.6	328.2	341.3	13.2	503.2	506.7	3.5	528.4	545.0	16.6	303.0	303.0	0.1
병.의원	762.1	769.1	7.0	292.9	303.9	11.0	469.2	462.2	-7.0	487.0	485.5	-1.5	275.1	285.6	10.5
보건협회	868.1	874.3	6.2	349.0	363.7	14.7	519.1	517.7	-1.4	562.8	565.9	3.1	305.3	308.4	3.1

# 2023년 외부평가

## 1) (B.1) 샘플평가지표의 샘플 수 감소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 여부 20 → 10개소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20 → 10명

## 2) 외부 평가 위원 평가지표 감소 (14→10개)

항목	'21년 외부위원 평가항목	'21년 연구 용역결과	최종 결과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B.1.2.1	문진의 적정성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B.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내부위원 이관	내부위원 이관
B.1.4.1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지침서	내부위원 이관	내부위원 이관
B.1.4.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	내부위원 이관	내부위원 이관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의 적정성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B.1.5.4	검사항목의 적정성		
B.1.6.1	2차 검사 대상자 후속 조치	내부위원 이관	내부위원 이관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 3) 과소 판정자 통계 추출

- 과소 판정자?
  - 고위험 결과에 해당되나 D가 아닌 A 나 C 판정
  - BEI 가 높으나 C2, D2 판정
  - C, D 판정인데, 업무조치는 '가'

#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 평가를 위한 필기도구 및 PC 준비
- 평가 1-2시간 전에 평가를 위한 사전 사업장 정보 받기
- 평가 시간변화 6→ 3시간 엄수!!
  - 평가 들어가면서 식별정보로 해당 수검자 차트를 시간 내에 찾기!

# 외부 평가 항목 250점

B.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310)	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절차 수립 및 시행	70
		1.2	증상문진 및 기록관리	40
		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20
		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20
		1.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40
		1.5	판정, 검사항목 선정 및 의학적 소견 설명	100
		1.6	2차 건진 대상자 후속조치	20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100)	2.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검사능력	40
		2.2	청각학적 검사능력	20
		2.3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능력	20
		2.4	분석정도관리 선택항목 참여 여부	20
B.3	신규 발굴율 (50)	3.1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 발굴율	50
B.4	고객 만족도 (80)	4.1	고객만족(수검자, 사업장) 및 서비스 향상활동	60
		4.2	사후관리 대상 지도	20

# 문서화

##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

□ 문서화 여부 평가기준

○ 문서화란 결재를 득한 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가 기입된 문서만 인정

평가기준	감점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관리 및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를 득함	감점 없음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관리하나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 또는 결재가 없음	-2점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관리를 하지 않고 문서상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 또는 결재가 없음	-3점

# 문서화 적용 문항

-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 B.1.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 및 지침
- B.1.5.2 업무관련성 평가 판정 지침
- B.1.5.3 업무적합성 평가 판정 지침

# 서류 준비

- 특수건강진단 판정 지침서 3개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서
- 사후관리 대장
- 업무분장 - 조직도 확인 및 조직도상 피질 문자 선정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건대상자 선정 등 사전 조사절차 보유 여부	사전조사 절차가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사전조사 절차가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8
	사전조사 절차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6
	문서화 여부(감점 : -5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대상업무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건기관 내부의 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확립과 교육(훈련) 정도를 파악하여 가에 반영</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점 : 사전조사 절차서가 적정하며 담당자가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음</li> <li>- 18점 : 사전조사 절차서가 적정하며 담당자가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음</li> <li>- 6점 : 사전조사 절차서가 적정하지 않음</li> </ul>		

항목	세부항목	수준	가중	확인
표준절차	사전조사자(실무자)에 대한 업무 분장	필수	2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및 대상자 선정기준	필수	2	
	보건관리자료(측정결과, MSDS, 건진결과) 확보절차	필수	2	
	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에 해당하여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파악 절차	필수	2	
	소음 외에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물리적 유해인자(진동, 전리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파악 절차	필수	2	
	협력업체, 파견직 등 누락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필수	2	
	관련 서식(사업장 점검표, 실시계획서)	필수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필수	2	
비표준상황	내원, 긴급 건진	필수	1	
	신규사업장	필수	1	
	보건관리자료 미비	필수	1	
	건설업	필수	1	
평가	해당 절차 확인해서 가중치 합 80% 미만인 경우 부적절 (가중치 합의 만점은 20점, 16점 미만인 경우 내용 부적절)		총 20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행과정의 적절성 파악 (B.1.1.1 실행여부)	사전조사 실행과정이 적정한 경우	☐ 40
	사전조사 실행과정이 보통인 경우	☐ 24
	사전조사 실행과정이 미흡한 경우	☐ 8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에 관한 기관내부의 표준운영절차가 현장에서 유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 (10개 사업장)</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80% 이상이 적정한 경우</li> <li>- 24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50% 이상~80% 미만이 적정한 경우</li> <li>- 8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50% 미만이 적정한 경우</li> </ul>		

항목	세부항목
자료 요청 및 사업주 측 정보 확인	<p>사전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건관리자료를 요청했는가? (<b>작업환경측정자료, 과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b> 등)</p>
	<p><b>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에</b> 해당하여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있는지 물어보았는가?</p>
	<p><b>소음 외에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물리적 유해인자</b>(진동, 전리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가 있는지 물어보았는가?</p>
	<p>작업환경측정 이후로 <b>시설, 장비, 유해물질에 변화가</b> 있었는지 물어보았는가?</p>
자료의 검토	<p>사전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건관리자료를 확보했는가? -모든 공정에 대한 과년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과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과년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등을 입수하지 않았다면 MSDS 자료 취득 및 검토 등으로 시행했는지 여부) -보건관리자료 미비의 예외에 해당되는가?(임시, 단시간 작업등)</p>
	<p>보건관리 자료와 선정, 실시된 유해인자가 상이하거나 누락된 것이 없어야 함</p>

<p>실시계획서 작성/확인</p>	<p>실시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보건관리자료 요약, 대상 업무 및 유해인자, 대상자 명단 포함)</p>
	<p>사업주(또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는가?</p>
	<p>특수건강진단기관 전문의의 확인을 받았는가?</p>
<p>평가</p>	<p>-평가 대상 사업장의 사전조사 실행과정은 위의 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적정으로 판단함. -비표준상황에 대해서 사전조사 절차서 지침에 따라 일부 생략된 경우 적정으로 판단 -사전 논의는 '자료요청, 사업주 측 정보 확인, 사업장 실시계획서 확인' 관련하여 주고받은 내용 등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함.</p>

B.1.2.1	문진의 적정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문진표, 개인표 등을 통한 과거 직력, 문진, 시진 검사 여부 확인	문진과정이 적절한 경우	☐ 20
	문진과정이 보통인 경우	☐ 12
	문진과정이 미흡한 경우	☐ 4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료진이 해당 근로자(수검자)의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에 대한 이해와 진찰(문진) 과정에서 근로자(수검자)와 의사와의 의사소통 등 문진 부분을 평가</p> <p>○ 평가방법</p> <p>- 적정 : 건강진단 개인표에 과거직력, 문진(과거병력, 현재증상 등)이 모두 기입되어 있으며 문진표 표가 작성되어 있고, 문진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동 내용을 파악 또는 파악된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있음.</p> <p>○ 평가기준</p> <p>- 20점 : 조사 대상 사업장 건진자의 80% 이상이 적절한 경우</p> <p>- 12점 : 조사 대상 사업장 건진자의 50% 이상 ~ 80% 미만이 적절한 경우</p> <p>- 4점 : 조사 대상 사업장 건진자의 50% 미만이 적절한 경우</p>		

항목	세부항목
<p>특수건강진단 기록지</p>	<p>직업력의 '직종'은 근로자가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근무부서, 작업공정)</p>
	<p>직업력의 '기간'은 현재 작업의 수행기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입사 연월일, 현부서 혹은 공정 전입일 등)</p>
	<p>과거 직업력의 '직종' 및 '기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대략적인 종사기간 또는 없음)</p>
	<p>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인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기로 작성한 것도 인정됨)</p>
	<p>건강진 시 어느 표적기관에 대한 문진 혹은 진찰이 필요한지에 대한 항목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기로 작성한 것도 인정됨)</p>
	<p>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p>
	<p>특수건강진단 기록지에 문진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가?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을 기입, 빈칸이면 안 됨)</p>

특수건강진단 기록지	문진 시 건강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호소가 있는 경우 의사와의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특수건강진단 기록지에 <b>의사의 서명이</b> 있는가?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공통양식의 특수건강진단 문진표를 사용하고 있는가? ( <b>공통양식의 문진표가 아닐 경우, 한 단계 하향함</b> )
	근로자가 증상문항의 내용을 체크하였는가?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의 증상문항에 대하여 <b>'심하다'</b> 라고 답변한 경우 의사와의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에서 <b>작업 및 작업 중 취급하는 물질과 관련된 건강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b> 라고 답변한 경우 의사와의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문진표 확인 등을 통한 이학적 검사 실시유무와 시행의 적절성 평가	진료기록지에 진찰관련 의사기록이 양호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진료기록지에 진찰관련 의사기록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진료기록지에 진찰관련 의사기록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료진이 해당 근로자(수검자)의 작업 내용과 적절한 이학적 검사수준 평가</p> <p>○ 평가방법 : 유해인자별로 이경 검사(좌·우), 진동 노출군에 대한 손톱압박검사, 통각, 진동각, 호흡기 및 순환기 고위험군에 대한 청진, 피부질환 대한 시진, 비강 및 인두 검사, 레 현상진찰, 안과 진찰 등에 대한 기록확인</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점 : 진료기록지에 적절한 진찰관련 의사기록이 80% 이상이 있는 경우</li> <li>- 12점 : 진료기록지에 적절한 진찰관련 의사기록이 80% 미만 ~ 50% 이상이 있는 경우</li> <li>- 4점 : 진료기록지에 적절한 진찰관련 의사기록이 50% 미만이 있는 경우</li> </ul>		

항목	세부항목
<p>특수건강진단 임상진찰</p>	<p>특수건강진단 기록지에 임상진찰을 시행해야 하는 표적기관(유해인자 관련)이 기재되어 있는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기로 작성한 것도 인정됨)</p>
	<p>임상진찰 시 이학적 검사를 위한 의학적인 도구를 구비 하고 있는가 ? (진료실 혹은 출장 모두 확인/이경, 타진기, 청진기, 악력기, 진동각 측정도구를 최소도구로 판단함 - 미확인시 한단계 하향)</p>
	<p>유해인자와 관련된 표적기관에 대하여 임상진찰을 시행하고 결과를 특수건강진단 기록지에 기록하였는가?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을 기입, 빈칸이 있으면 안 됨)</p>
	<p>임상진찰 시 이상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진찰 내용이 특수건강진단 기록지에 기록하였는가?</p>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결과의 불일치 여부 확인	청력검사결과의 불일치 여부가 양호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청력검사결과의 불일치 여부가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청력검사결과의 불일치 여부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p>○ 평가목적 : 직업성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소음성 난청을 표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항목인 청신뢰성을 측정함으로써, 해당 건진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전체적인 질(수준)</p> <p>○ 평가방법</p> <p>- 동일 기관별로 소음에 대한 2차 건진 항목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 과거 2회 이상 청력 특수건강진단 과를 확인하여 불일치성 조사</p> <p>○ 평가기준</p> <p>- 20점 : 조사 대상 근로자의 10% 미만 불일치</p> <p>- 12점 : 조사 대상 근로자의 10%이상 ~ 20% 미만 불일치</p> <p>- 4점 : 조사 대상 근로자의 20% 이상 불일치</p> <p>* 불일치 : 전체 주파수별 청력검사결과 중에서 단 한 개라도 15 dB 이상 좋아진 경우.</p>		

# 청력불일치 평가 대상 선정

-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공단에 전송된 입력자료를 스크리닝 → 사전 결정 불일치율
  - 불일치건수 / 전체대상건수
  
- ② 평가대상 건 중에서 10건을 무작위 선정 → 합리적 근거 있다면 사전결정 불일치율 보정
  - 사전결정 불일치율 \* ((10-합리적 근거 건수)/10)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 방법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건강진단 결과 판정방법의 적정성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25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15
	건강진단결과 판정 방법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5
	문서화 여부(감점 : -5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결과판정의 프로세스가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규정된 판정지침에 따 여부 확인</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5% 미만</li> <li>- 1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5% 이상 ~ 10%미만</li> <li>- 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10% 이상</li> </ul> <p>○ 적합 : 결과판정에 임상 참고치, 이상징후, 노출추정, 관찰, 생물학적 노출지표, 문진(과거직 거병력, 현재증상 등),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모두 활용해 판정한 경우</p> <p>○ 지침서 : 임상참고치, 이상징후, 노출추정,관찰, 생물학적 노출지표 결과, 문진, 작업환경측정결 을 고려한 일련의 process로 구성(공단의 실무지침이 아님)</p>		

# 지침서 평가

항목	수준	확인	세부항목
비뇨기계	필수	•필수 부분 미흡 시 한 단계 하향	-주요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별 판정 기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판정지침이 수시로 판올림되고 있지 않으면 한단계 하향 평가
조혈기계	필수		
간담도계	필수		
호흡기계	필수		
이비인후계	필수		
눈·피부·비강·인두	필수		
신경계	필수		
심혈관계	선택		-- 지침서의 판정기준은 유관학회, 실무지침 등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임상적 기준을 따라야 함,
생식기계	선택		
위장관계	선택		
악구강계	선택		
근골격계	선택		
기타	선택		

# 지침서 업데이트

- 2021. 01.16
  - 신규 유해인자별 판정기준 신설
    - 인듐추가
    - 1,2 - 디클로로프로판 추가
- 2022.01.01
  - 호흡기계 1차 검사항목의 객담세포검사 삭제
  - 소음판정기준 내용 변경 및 추가

# B151 과소판정 기준

조건	기준	
과소판정	 검사결과가 위험결과임에도 불구하고 D로 판정되지 않고 A 또는 C로 판정된 경우	
위험결과	구분	
	기준	
	심혈관계	혈압 수축기 혈압 16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100 mmHg 이상
		혈당 공복혈당 200 mg/dL 이상
		지질 중성지방 1000 mg 이상 또는 LDL 190 mg/dL 이상
	간담도계	AST 150 IU/L 이상 또는 ALT 150 IU/L 이상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평가(C1,C2,C <sub>N</sub> D1,D2,D <sub>N</sub> ) 방법의 적정성 여부	업무관련성 평가(판정)가 양호함	<input type="checkbox"/> 25
	업무관련성 평가(판정)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15
	업무관련성 평가(판정)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5
	문서화 여부(감점 : -5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의 결정이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규정된 판정지침에 여부 확인</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5% 미만</li> <li>- 1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5% 이상~10% 미만</li> <li>- 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10% 이상</li> </ul> <p>○ 적합 :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 행태 관찰, 문진(직업력, 노출기간, 공정, 취급방법 등 작업환경 부결과를 모두 활용해 판정한 경우</p>		

# B152 과소판정

조건	기준
과소판정	- BEI가 참고치를 넘었는데 C2 또는 D2로 판정된 경우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업무적합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업무 적합성 평가가 양호함	<input type="checkbox"/> 25
	업무 적합성 평가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15
	업무 적합성 평가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5
	문서화 여부(감점 : -5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결정이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규정된 판정지침에 따 여부 확인</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점 :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 (적정성 80%이상)</li> <li>- 15점 :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다소 부족함 (적정성 50% 이상~80% 미만)</li> <li>- 5점 :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적정성 50%미만)</li> </ul>		

항목	세부항목	수준	확인	비고
판정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건강영향 유무는 판단하였는가?	필수	○	
	근로자에 건강 악화 가능성은 판단하였는가?	필수	○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는 판단하였는가?	필수	○	
	질병의 상태가 (한시적) 업무제한을 해야 할 정도(현재 노출 유해인자 혹은 근무조건<야간>이 현재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로 중한 상태에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조건 없이 업무가 능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는가?	필수	○	

# B153 과소 판정

조건	기준
과소판정	- 건강진단 결과 C, D 인데, 업무적합성이 '가'로 판정된 경우 (업무 가능과 관련한 적절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사항목의 적절성	검사항목이 선정이 적정한 경우	□ 25
	검사항목이 선정이 보통인 경우	□ 15
	검사항목이 선정이 미흡한 경우	□ 5

○ 평가목적 : 1차 검사항목은 모두 필수검사항목이고, 2차 검사항목 중에서는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시 실시하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필수검사항목이나 적정한 이유 없이 임의로 필수검사항목을 누락시키는 바, 적정실시여부 확인

○ 평가기준

- 25점 :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고,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실시 사유가 모두 기록

- 15점 : 필수 검사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미실시 사유 기록이 80% 이상 작성

- 5점 : 필수 검사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미실시 사유 기록이 80% 미만 작성

○ 검사항목

- 1차 검사항목은 모두 필수, 2차 검사항목 중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시 실시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필수 검사임(이학적 검사는 문진항목에서 평가)

# B154 과소판정

조건	기준		
부적절 2차 미 실시	<p>☞ 검사 결과가 위험결과인데 2차 건강진단으로 확인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되지 않고, 적절한 이유 없이 1차 건강진단만으로 판정된 경우(2차 미 실시된 경우)</p>		
위험 결과	구분	기준	
	심혈관계	혈압	수축기 혈압 16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100 mmHg 이상
		혈당	공복혈당 200 mg/dL 이상
		지질	중성지방 1000 mg 이상
간담도계		AST 150 IU/L 이상 또는 ALT 150 IU/L 이상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설명의 적절성 여부 확인	유소견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유소견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유소견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에서 전체 유소견자들(<math>D_1, D_2, D_N</math>)을 대상으로 유소견자들에게 의학적 소견, 사후 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점 : 유소견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80% 이상</li> <li>- 12점 : 유소견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50%이상~80% 미만</li> <li>- 4점 : 유소견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50% 미만</li> </ul>		

항목	세부항목
사후관리 방법	<p>특수건강진단결과에서 '질병 유소견자들'의 '업무수행 적합여부'나 '사후관리 조치내용' 등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p>
	<p>특수건강진단결과가 적법한 기간(건강진단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되었는가?  <b>(30일이 지난 경우 통보되었을 때, 부적합)</b></p>
	<p>사업장 내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있다면 근로자건강진단결과를 해당 '의사'에게 제공하였는가?</p>
	<p>사업장 내 '의사'가 없다면, 특수건강진단 담당 '의사 혹은 간호사'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혹은 유소견자에게 내원을 요청하거나 전화로, 적절한 사후관리 정보(내용)를 직접 설명하였는가? <b>(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경우, 한단계 하향)</b></p>
구비 서류	<p>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결과 설명 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p>
	<p>'사후관리' 내용 및 결과가, '사업장별 기록'으로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가?</p>

항목	내용	배점 250 (A/B/C)	점수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30/18/6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40/24/8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20/12/4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20/12/4	
B.1.2.1	문진의 적정성	20/12/4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20/12/4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 방법의 적정성	25/15/5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25/15/5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25/15/5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25/15/5	
		총점 250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Q&A

운정와이즈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조민희  
minigum9741@gmail.com